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춘천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고단1350 판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고단1350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4.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와 SNS인 D를 통해 연락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8. 3. 00:00경 춘천시 E아파트 102동 7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SNS상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이나 속옷을 입은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하여 D 계정에 올렸던 것을 구글링을 통해 수집한 후 피해자의 SNS로 연락하여 위 사진을 공유시키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과 관련하여, "내가 왠만하면 안이럴려고 했거든 OO아?? 선택권이 두가지있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해버리던가 내 노예하던가, 대답 안할거야??, 니가 기분 더럽게 했거든 너가 원하는 대답은 나중에, 언니 F학교 다니는거 맞지? 알고 묻는거니까 놀라 지마, 대답 앞으로 삼분 안에 안하면 언니한테 말하고, 이방 누구방인지 알겠지 언니 는? 이 속옷도? 빨리 대답해 그니까. 너 아무리 머리 굴려도답은 둘 중 하나야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던지 아님 노예하던지"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SNS를 통하여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공유시키고 "나는 너 보기만 볼려고 했는데 너가 날 화나게 했어, 조건은 6개월, 그러면 아무일 없을거야, 어차피 6개월 동안 걸레처럼 쓰다가 버릴거니까, 갖고 싶어, 너랑 했던 야한 말들 다 하고 싶어, 화풀면, 딴새끼 딴자지 보면서 흔들 게?"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 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곧바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행에 그쳤고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판사 조정래